#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5957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시시가리   |  |
|--|--------|---------------|-------------|--|--|
| 의안병  |        | (제출자)         | (제출일)       | 심사경과   |  |
| 각급 법원의<br>설치와<br>관할구역에 관한<br>법률<br>일부개정법률안 | 제253호  | 민형배의원<br>대표발의 | 2024.06.10.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br>전체회의(2024.08.23.) 상정<br>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br>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br>제1소위원회 회부 |  |
|  | 제1070호 | 김교흥의원<br>대표발의 | 2024.06.27.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br>전체회의(2024.09.23.) 상정<br>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  |
|  | 제1499호 | 주호영의원<br>대표발의 | 2024.07.08. |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부  |  |
|  | 제4509호 | 배준영의원<br>대표발의 | 2024.10.0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br>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br>직접 회부(2024.11.25.)                                    |  |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6.)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2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 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 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 법률 제 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천고등법원 | 인천광역시 |
|--------|-------|
|        |       |
| 대전회생법원 | 대전광역시 |
|        |       |
|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
|        |       |
| 광주회생법원 | 광주광역시 |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 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 천 | 인 천 | 인천광역시 | 영종구・제물포구・미추홀 |
|-----|-----|-------|--------------|
|-----|-----|-------|--------------|

|    | 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        |
|----|--------------------------|
| 북부 | 인천광역시 검단구·계양구·서구·강<br>화군 |
| 부천 | 부천시・김포시                  |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
|-----|-----|----|-----------------------|
| 인 천 | 인 천 |    |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
|     |     | 부천 | 부천시・김포시               |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대 전 | 대 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
|     |     |                      |
| 대 구 | 대 구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     |                      |
| 광 주 | 광 주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 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

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5 -